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자치입법권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국방부 등 6개 기관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제한하거나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을 정한 경우 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안 제1조)

- 1) 법률에서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에 포함되는 장애물의 구체적 설치·운용 방법까지 정함.
- 2) 법률이 위임한 내용과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만을 정하고, 대비책의 세부 내

용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 제2조)

- 1) 법률에서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개방화장실의 구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2) 개방화장실의 구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 제4조)

- 1)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 및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2) 지방자치단체의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 및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8. 31. ~ 10. 11.)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부 사항”을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2조(「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법 제25조제1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으로,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한다.

제5조(「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6조(「지하수법 시행령」의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그 내용을”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공고방법, 공고내용 및 공고기간을 따라야 한다.

1. 공고방법: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밖에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할 것

2. 공고내용: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

3. 공고기간: 14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제4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으로 한다.

제8조(「경관법 시행령」의 개정)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시·도지사 등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공고방법, 공고시기 및 횟수를 따라야 한다.

1. 공고방법: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것

가. 공청회의 개최 목적

나.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공고시기 및 횟수: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할 것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공고방법 및 공고내용을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고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할 것

2. 공고내용: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

제22조제3항 중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를 “14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반이 도시·군관리계획안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개발특별 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개발특별 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물류단지개발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물류단지개발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

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u>세부 사항</u>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 ----- ----- <u>조례</u>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u>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되, 이동식 장애물은 평시에 제작·확보하고 그 설치 방법을 자세히 알도록 하여 유사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u>	2. ----- ----- ----- -- <u><후단 삭제></u>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 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 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 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 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등) ① (생략) ② 둘 이상의 역사문화권이 중복되는 지방자치단체는 <u>법 제25조제1항</u> 에 따른 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역사문화권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조례로</u> <u>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u>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u>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u> 해당 업무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u>지정하여야</u> 한다.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u>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u> ----- ----- ----- ----- ----- ----- <u>지정해야</u> -----.

지역보건법 시행령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보건소의 추가 설치) ① (생략)	제8조(보건소의 추가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이조 제1항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 이 경우 <u>행정안전부장관</u> 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u>협의</u> 하여야 한다.	② ----- ----- ----- ----- --. ----- <u>해당 지방자치단체</u> <u>의 장</u> ----- <u>협의</u> <u>해</u> -----.

지하수법 시행령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① (생략)	제20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특별자치시장은 지하수보전구 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1항에 따라 통 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은 <u>그 내용을</u> 공고하고 14일 이 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u>하 여야</u> 한다.	② ----- ----- ----- ----- ----- ----- -- <u>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u> ----- <u>해 야</u>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며,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간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공고방법, 공고내용 및 공고기간을 따라야 한다. 1. 공고방법: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밖에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할 것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람 기일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때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2. 공고내용: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

3. 공고기간: 14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

•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⑤ · ⑥ (생 략)	----- -----. ⑤ · ⑥ (현행과 같음)
---	--

경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시·도지사 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시·도지사 등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공고방법, 공고시기 및 횟수를 따라야 한다. 1. 공고방법: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것 가. 공청회의 개최 목적 나.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공고시기 및 횟수: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할 것 <삭 제>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	

<u>회는 시·도지사등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u>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생략)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 ·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u>도시 ·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u>	②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공고방법 및 공고내용을 따라야 한다.

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

1. 공고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할 것

2. 공고내용: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

③ -----

----- 14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반이 도시·군관리계획안을 --
-----.

④ 제2항에 따라 -----

람기간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 ----- ----- -----. ⑤ ~ ⑦ (현행과 같음)
---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u>법 제61조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4. (생략) ② <u>법 제61조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2. (생략)	제8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u>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4.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2. (현행과 같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u>법 제41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4. (생략) ② <u>법 제41조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 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2. (생략)	제32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u>법 제41조제3 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u> 1. ~ 4.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물류단 지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연 락 처	(02) 748 - 3457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545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연 락 처	(042) 481 - 3101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2 - 2277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연 락 처	(044) 201 - 7187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3226